

영등포구의회  
제13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2007. 9. 5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 專 門 委 員 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7. 8. 29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개정(제안)이유

- 「도로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및 2007. 4. 17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함(안제2조제1호)
- 「도로법」 제78조에 따라 증가산금 징수적용 대상을 체납액 30만원이상에서 5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(안제8조제1항)
-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, 진입로, 비가리개 등의 점용료 100분의 80을 경감함(안제7조)
- 1993년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에 대하여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6조의 2(점용료의 산정기준)의 개정으로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된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 - 정액제 점용료 38%인상(1993년대비)함(안별표1)

## 관련법규

- 『도로법』·같은법시행령·같은법시행규칙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·같은법시행령·같은법시행규칙
- 『국세징수법』·같은법시행령
- 『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·같은법시행령
- 『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』

##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, 양천구, 강서구, 종로구 등

## 검토의견

- 「도로법시행령」 제26조의2(점용료의 산정기준)의 개정(2007. 1. 5. 공포·시행)으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가 정율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가 2007. 4. 17. 개정되었으며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06. 4. 28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(조례)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,
  - **안 제2조제1호의**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신설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
    - 이는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제작·설치 및 관리지침(2006. 3)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른 것이며
  - **안 제8조제1항** 체납자에 대한 증가산금 면제대상 범위조정에 대하여는
    - 그동안 「지방세법」을 준용하던 증가산금 면제대상 범위를 동 조례 상위법인 「도로법」 제78조에 맞추어 상향조정(체납액 30만원미만→50만원미만)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
  - **안 제7조** 재래시장 및 상점가 도로점용료 80/100감면에 대하여는
    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전부개정(2006. 4. 28)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하여 201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점용료를 80퍼센트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

○ **안 별표1의** 정액제 점용료 조정에 대하여는

- 정액제 점용료가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년 점용료가 다르게 산정되는 것과는 달리 정액제 점용료는 1993년이후 전혀 조정되지 않아 정액제 점용료를 38%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「도로법시행령」 개정(2007. 1. 5)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그러나, 일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
**- 수정 1)**

- 안제6조제2항의 규정에 “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” 라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사유는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“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” 로 되어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

**- 수정 2)**

- 부칙③(유효기간) “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제4호는 2014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” 를 “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제4호는 2016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”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.

- 사유는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9. 5.

보고자 : 이 남 식

## 수 정 (안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비 고
제6조(점용료등의 조정) ①생략 ②제1항의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		제6조(점용료등의 조정) ①생략 ②삭제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 의함
부칙③(유효기간)제2조 제3호와 제7조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2014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		부칙③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2016년12월31일까지 -- -----	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(한시법 2016. 12. 31)